

충청북도건축위원회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조례는 건축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건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, 도시계획, 도시설계, 에너지, 회화, 조경,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도지사의 차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①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2항, 제3항의 건축사항

② 건축법 제59조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

③ 건축법 제62조의 도시설계안의 심의사항

④ 기타 건축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위임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등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를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자료제출 요구등)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련기관의 장의 설명을 들 수 있다.
②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건축심의 결정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7조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.
②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·주택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과 여비)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"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"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규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조례) 충청북도건축조례 제1268호(1989. 2. 11)는 이를 폐지한다.
- ③(폐지조례에 대한 경과조치) 폐지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과 건축물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